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3차 여성가족분과TF 회의록(6월)

일 시	2020. 6. 29.(월) 15:00 ~ 17:30	기록	임복희	확인	신필교, 조여옥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					
참석자	총 5명 참석					
	조여옥	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	○	신필교	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장	○
	박성희	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	○	이영안	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	○
	박재규	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	○	한진희	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	○
			임복희	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	○	
회의주제 및 안건	1. 안건논의 1) 지역성평등지수 정책영역별 검토 방향 및 원칙 논의 2)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'성평등실천 여성의 권리보장 확대' 전략 성과지표 검토					
회의결과	1) 지역성평등지수 정책영역별 검토 방향 및 원칙 논의 ○ 논의사항 - 경기도 지역성평등 관리지표 의미 : 성평등 격차를 줄이려면, 무엇을 관리하면 지역성평등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연구함. 관리지표는 과정에 대한 지표이고, 지역성평등지수는 결과에 대한 지표임. 관리지표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지표 - 성평등은 성별 차이, 성별 격차를 줄이는 올바른 방향을 지향함. 예)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하향평준일수도 상향평준일수도 있는데, 올바른 방향 및 방법으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- 현재 기획의 평등은 어느정도 갖추어졌으나, 실질적 성평등은 미흡한상황 - 중앙 및 경기도 지역성평등지수를 선 검토 후 대안 지표 제시가 필요 - 지역성평등지수 23개 지표 중 5개 정도만 취합이 안되는 상황(박재규센터장님 교육 자료 참조) → 통계자료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것인가?,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한 수원형으로 개발을 할것인가? 결정 필요 - 코로나 상황에서 체육관에서도 남녀 격차를 느낌. 체육관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, 강사는 여성임.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여성인 강사 ○ 지역성평등지수 검토·개발 원칙 - <u>수원시 지표값(데이터)이 있는 지표일 것</u> → 수집 어려운 지표 및 수원시 특성반영한 대안지표 검토, 개발 - 지표값(데이터) 근거 및 출처 명시 - 지표값(데이터) 자체의 한계(지표가 갖는 의미성) 등도 같이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지표 검토					

	<p>○ 분과활동 단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❶ 정책영역별(모듬별) 지역성평등지수 해당 수원시 데이터 취합 : 3년치 데이터 1차 취합 (7/15 회의시 논의) - ❷ 취합 어려운 지표 및 수원시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지표 검토, 추가 : 8월 ※ 지역에서 실천을 통해 변화 가능한 지표 마련 - ❸ 내부 검토, 외부 전문가 검토 : 9월 - ❹ 보완, 수원시 제안 : 10~11월 <p>○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가부 지역성평등지수 근거 참고하여 통계청 등 활용하여 지표값(데이터) 수집 ※ 지표값(데이터) 입력할 수 있는 엑셀 양식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 <p>2)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'성평등실천 여성의 권리보장 확대' 전략 성과지표 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성평등지수 개발이 안된 현 상황에서 내년 평가 시 가능한지 검토 -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중 영역별 대표 지표 선정하여 재구성하는 방안 - 지표값은 2018년도 데이터가 최신 자료임. 2021년에는 2019년 자료로 매해 자료의 2년 격차가 있음. 당해연도 계획 평가에 대한 격차 발생 - '성평등 실천! 여성의 권리보장 확대!' 추진전략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? 성과지표에 대한 근본적 질문 재정립 필요 → 보장계획의 11개 세부사업을 통해 달성되는 성과가 '지역성평등지수'라는 거시적 성과지표로 측정가능한가. 세부사업에 비해 전략 성과지표가 너무 거시적임. 계획의 세부사업으로부터 출발한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고민 필요 → 차기회의시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한 통계 검토 → 지역성평등지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과지표를 유지하며, 수집 가능한 지표를 취합하여 사용 <p>⇒ 7월 분과회의시, 지표값(데이터) 취합 내용 및 상황을 보고 성과지표 변경 여부 판단. 당초 취지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.</p>
--	---